사 업 명

(6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14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인구정책실		080	08A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사회복지	아동·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3	300	
명칭	보육지원강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기	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 25~45%	
						지방 55~75%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71 H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41,751	1,621,454	2,888,694	2,888,694	1,267,240	78.2

4. 사업목적·내용

-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 아동수당법 제4조('23,9.14. 시행)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칙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 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로 영아수당 도입 ('20.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8.), 근거법 마련('21.12.)
- 영아수당 지원사업 시행('22.1~)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 *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공약내용)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
- 부모급여 지원사업 시행('23.1~)
- 부모급여 지급근거를 규정한「아동수당법」개정('23.5)

6.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1~, 단년도 계속 사업
- 기타: ('22년 본예산 기준) 연간 1,817,446건 지원 예정(월평균 151천명) ('22년 추경 기준) 연간 1,698,339건 지원 예정(월평균 142천명) ('23년 본예산 기준) 연간 3,871,400건 지원 예정(월평균 323천명)

('24년 본예산 기준) 연간 5,658,766건 지원 예정(월평균 472천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만 0~1세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2,888,694 백만원	서울 25~45 지방 55~75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시·도	국고보조금에 지방비(시·도비)를 가산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시·군·구	지원대상자 선정, 급여액 확정 및 지급 및 정산 ※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지급				